

# 기안용지

(전화: 713-6156)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분류기호  | 원부 02124               |
| 문자번호  | 10.53.1                |
| 보통기안  | 1990. 4.               |
| 수신처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통기안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행일자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처장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획관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안제일시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작성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목    | 시운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종개정규정(안) |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시행일  | 1990. 4. 28 |
| 특별취급 |             |
| 결재   | 1990. 4. 28 |
| 부시장  |             |
| 시통제  | 1990. 4. 28 |
| 검열   |             |
| 통제관  |             |
| 발령   |             |

*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*

*Handwritten text and stamp*

(제1안)

수신: 내부결재

제목: 같은 것

## 1. 시운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종개정규정

윤

시운특별시 법제사무처 기획 제 39호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  
 부에 의해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: 발령안 1부.

(제2안)

수신: 홍보관

제 목 : 시 보 개 제

1. 민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문

경 개

시보에 게재 발행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700 호 1부. 끝.

( 세 3 안 )

수 신 : 총 무 과 장

제 목 : 훈령 발행

1. 총무02125-328 (90 4 17 . 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을

시보에 게재 발행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700 호 1부. 끝.

11-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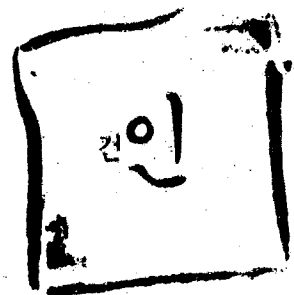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정원경찰징계규정종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4월 28일

서울특별시장

고



무시

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은 내무국장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과장, 도시시설과장, 녹지과장, 비상계획과장,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이 된다.

제1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위원장은 재무국장, 부위원장은 국민운동지원과장, 위원은 법무담당관, 세정과장, 시민생활과장, 민방위과장이 된다.

부 칙

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